

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안내

-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 -

1. 개정 시행령 개요

- 베트남 정부는 “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(102/2013/ND-CP)”을 2013.9.5일 공포하였고, 2013.11.1부터 시행 예정
 - 동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 (재)발급,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 출국 등을 규정함
 - 특히,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축소하였고, 사용자는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고 있음
- ⇒ 따라서,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고,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

2.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

□ “전문가” 정의 개정 및 “기술자” 정의 신설

-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 대상인 “전문가”의 정의를 개정하고, “기술자”의 정의를 신설함
- 전문가(Experts)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,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(engineers)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
- 기술자(Technicians)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,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

□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전 승인 등

- 종전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, 직종, 기술수준, 임금, 근로조건 등을 채용 공고한 후에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
- 개정 시행령에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차는 폐지되었고, 매년 사용자(도급업자는 제외함)는 베트남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,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·보고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
- 또한, 개정 시행령은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,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, 수준, 전문능력, 경력을 명시하도록 함

□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

- 종전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,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, 베트남 근무과전 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

□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

-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
-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
-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진,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
- 관리자, 운영 책임자, 전문가,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-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

-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(규격 : 4cm × 6cm, 모자 미착용, 얼굴은 정면 응시,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, 안경 미착용, 사진바탕은 흰색)
- 법률 규정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
-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

□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

-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영업일 이전에,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
 - ※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 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,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
-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, 노동보훈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
 -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
 - ※ “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”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5영업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을 제출

□ 강제출국 규정 신설

-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

□ 기 타

- 종전 시행령은 노동허가증 재발급과 노동허가기간 연장을 구분 하였으나,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으로 통합함
- 개정 시행령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, 자원봉사자 등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보훈사회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